

| 위원회 동정_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과로사 없는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과로사방지법 도입 논의

설문수 전문위원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기반으로 '18.7.17에 출범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간 장시간 노동과 안전보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실태와 해외 사례 등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과로사방지법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지난 12.27. 제10차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특히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 수준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과로사방지법 권고를 위해선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로사방지법 제정 권고와 논의지속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박두용 위원장은 미국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및 현황 등에 대한 정보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나라 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외자료 조사·연구 시 미국 사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박두용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안화력 사망사고(故 김용균 씨)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작동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볼 것을 긴급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장의 안전보건 작동체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병존해 일단 유보하기로 하였다. 다만, 동종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최종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전체위원들이 공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12차 전체회의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합의(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과로사 등을 예방토록

하는 법률 제·개정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과중한 근로로 인한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본 위원회가 과로사방지를 위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과로사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월 26일(화) 개최 예정인 제13차 전체회의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방안으로 논의 중인 과로사방지 대책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여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발족취지: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8.7.17. 발족